

의안번호	2211270
의 퇴 인	이달희 의원
회 답 일	2025. 7. 7.
추계번호	25F360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및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9.41억원, 2028년 9.41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28.23억원(연평균 9.4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8조제1항)	-7.76	-7.76	-7.76	-23.28	-7.76
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8조제2항)	-1.65	-1.65	-1.65	-4.95	-1.65
합 계	-9.41	-9.41	-9.41	-28.23	-9.4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8조제1항 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)	○ 새마을운동조직의 고유업무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88조제2항 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)	○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8조제1항 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88조제2항 (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(안 제88조제1항)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1년 1.9억원에서 2023년 0.3억원으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3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.13억원
 - (재산세) 2021년 6.5억원에서 2022년 6.9억원으로 증가, 2023년 6.5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3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6.63억원
- (안 제88조제2항)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2년 감면이 재개된 이후 취득세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, 향후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- (재산세) 최근 2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2년(2022~2023년)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1.65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8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대상: 「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」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
 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함
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감면(최소납부세 적용으로 85% 감면)
 - 취득세 200만원, 재산세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%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(지특법 제177조의2제1항)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추계방법)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1년 1.9억원에서 2023년 0.3억원까지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3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.13억원

- (재산세) 2021년 6.5억원에서 2022년 6.9억원으로 증가, 2023년 6.5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3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6.63억원

[표 2] 새마을운동조직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8.4	8.0	6.8
- 취득세	1.9	1.1	0.3
- 재산세	6.5	6.9	6.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7.76억원에서 2028년 7.76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23.28억원(연평균 7.7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새마을운동조직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8조제1항)	-7.76	-7.76	-7.76	-23.28	-7.76
- 취득세	-1.13	-1.13	-1.13	-3.39	-1.13
- 재산세	-6.63	-6.63	-6.63	-19.89	-6.63

나.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8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 감면(최소납부세 적용으로 85% 감면)
 - － 취득세 200만원, 재산세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%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에 해당하는 감면율 적용(지특법 제177조의2제1항)
- 감면연혁: 2014년 일몰적용으로 감면 중지, 2022년 이후 감면 재개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추계방법)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2년 감면이 재개된 이후 취득세 감면실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, 향후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- (재산세) 2022년 2.0억원에서 2023년 1.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2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－ 최근 2년(2022~2023년)간 재산세 연평균 감면액: 1.65억원

[표 4] 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2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
감면실적	2.0	1.3
－ 취득세	0	0
－ 재산세	2.0	1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.65억원에서 2028년 1.65억원 등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총 4.95억원(연평균 1.6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8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한국자유총연맹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8조제2항)	-1.65	-1.65	-1.65	-4.95	-1.65
－ 취득세	0	0	0	0	0
－ 재산세	-1.65	-1.65	-1.65	-4.95	-1.6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